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27

발의연월일: 2021. 1. 28.

발 의 자: 박완수 · 이명수 · 김도읍

조해진・최형두・추경호

김용판 · 하영제 · 강기윤

조경태 • 권영세 • 이종배

김형동 · 김성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통해 사전투표 관리 부실 및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법적 소송 등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전투표용지 등의 관리부실, 투표용지 QR코드 부여에 따른 개인정보 수록 가능성, 통합전산망 보안, 사전투표함 관리 및 보관 부실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 관리의 신뢰성 제고에 장해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면 서도 보안대책 등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미비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체계 확립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사전투표관리 인원 확충, 사전투표용지 등 QR코드 사용근거 명확화, 해킹방지책 강화, CCTV 확충 등 사전투표절차 전반의 보안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투표관리 체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1항, 제148조제5항, 제154조의2제2항, 안 제158조제6항 및 안 제176조제3항·제5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1명을 각각"을 "2명을 각각"으로 한다.

제148조제5항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하여야 하되, 해당 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151조제6항 후단 중 "막대 모양의"를 "막대, 점자 또는 모자이크 등모양의"로,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를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154조제1항 전단 중 "막대 모양의"를 "막대, 점자 또는 모자이크 등모양의"로 한다.

제154조의2제2항 중 "해당"을 "일련번호,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151조제6 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158조제6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 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

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 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58조제8항 중 "전기통신"을 "투표용지의 취급방법, 전기통신"으로, "사전투표절차,"를 "사전투표절차 등"으로 한다.

제162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하고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8조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우편투표함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		
투표관리관) ①구・시・군선거	투표관리관) ①		
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			
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			
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			
관 <u>1명을 각각</u> 둔다.	<u>2명을 각각</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⑤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을 <u>구축하여야</u> 한다.	구축하여야 하되, 해당		
	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 방지		
	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		
	치・운영 등 기술적 보호조치		
	<u>를 하여야</u>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		
성) ① ~ ⑤ (생 략)	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6		
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			

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함께 담을 수 있다.

⑦ ~ ⑨ (생 략)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 용지의 발송) ①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거소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 (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거소투표자의 거소·성명·선거

막대, 점자 또는 모자이크
<u>등 모양의</u>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
런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
를 담아서는 아니된다.
⑦ ~ ⑨ (현행과 같음)
세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
용지의 발송) ①

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 시한 <u>막대 모양의</u> 기호를 말한 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① (생략)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할 때표지부분과 투표부분을 구분하고, 표지부분에는 선거인 확인란과 해당 선거구의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선상투표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u>막대, 점자 또는 모자이</u>
<u>크 등 모양의</u>
<u>.</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u>일련번호, 해당</u>
이 경우 선상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 ③ ④ (생 략)
- 제158조(사전투표) ① ~ ⑤ (생략)
 -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u>제15</u>	<u>1조제6항</u>	후단:	을	<u>순용한</u>
<u>다.</u>				
3 •	④ (현행고	가 같음)	
]1583	조(사전투표	E) (1)	~ (5) (현
행과	같음)			
6 -				
1				
	경우 /			
	보자 별로			
	씩을 지정			
	<u> </u>			
	투표관리관			
	표참관인이			
	<u>동행을 7</u> 최 0 - 포기			
전 (한을 포기	<u>안 것</u>	으도	모끄

- 2. (생략)
- (7) (생략)
-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 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 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② ~ ⑤ (생 략)
-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 | ② (생략)
 - <u><신</u>_ 설>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 다.

- 2. (현행과 같음)
- (7) (현행과 같음)
- ⑧ 투표용지의 취급방법, 전기 통신 -- 사전투표절차 등 ---

- ----- 하고 제158조제6항제1 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 다만. 제158조제6항제1호 후단 에 따라 사전투표참관인이 정 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③ (생 략) <신 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 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 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 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 관하여야 한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⑤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 우편투표함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